

# 학생상담센터 규정

- 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5. 5. 13.
- 개정 : 2016. 3. 9.
- 개정 : 2017. 2. 28.
- 개정 : 2017. 8. 31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19. 3. 1.
- 개정 : 2019. 11. 29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상담센터(이하 “상담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상담센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지도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
2. 진로·심리검사 및 해석
3. 진로 상담 및 교육
4. 인성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
5. 학생상담 및 대학생활 지도에 필요한 제반문제 조사연구
6. 지도교수 및 교내 관련 부서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 활동
7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**제3조(조직)**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과 전임상담사 및 직원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위원과 객원상담사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상담센터를 대표한다.

③ 전임상담사는 상담관련 전공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진로 및 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(청소년상담사 2급, 상담심리사 2급, 직업상담사 등),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과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전문인으로 한다.

④ 센터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4조(임무)** ①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7-1-12 학생상담센터 규정

- ② 전임상담사와 직원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상담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상담업무 및 검사활동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·평가한다.
- ③ 학생 개인의 건강문제 또는 법률문제 등과 관련된 전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임 상담사 또는 상담위원회 위원과 상담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운영위원회 설치)** 상담센터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6조(평가)** 상담센터는 당해연도 실적을 자체평가하고,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.

- ① 신입생 및 재학생 수요조사 결과
- ② 개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
- ③ 학생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
- ④ 연간 학생상담센터 운영 결과
- ⑤ 운영위원회의 평가 결과

**7조(정보보호)** 학생상담 관련 담당자(상담사, 지도교수, 운영위원회 위원 등)는 학생상담 과정에서 획득한 일체의 내용과 개인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되며,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.

- ① 상담센터 이용 학생은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,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,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, 상담계획에 참여할 권리, 어떤 서비스는 거절할 권리 그리고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상담센터 이용 학생은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. 다만 상담센터 이용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상담소 이용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.
- ③ 상담센터 이용 학생이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본인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응한다. 다만 상담센터 이용 학생과 관련된 타인의 사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학생생활연구소 규정은 폐기하고, 관련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